

[별첨1] 정관 신규대조문

변경전	변경후	비고
<p>제 8 조의 5 (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p>	<p>제 8 조의 5 (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u>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조문일부수정</p>
<p>제 9 조 (신주인수권) 1 ~ 4 (생략) 5.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6 ~7 (생략)</p>	<p>제 9 조 (신주인수권) 1~4. (현행과 동일) 5.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u>재무구조개선, 기술도입, 사업제휴, 신규사업추진 및 긴급한 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u>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기타이사회에서 정한 제 3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6~7 (현행과 동일)</p>	<p>조문일부수정</p>
<p>제 16 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u>20,000,000,000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u>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 3. (생략)</p>	<p>제 16 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u>100,000,000,000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u>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3. (현행과 동일) 4. <u>재무구조 개선, 기술도입, 사업제휴, 신규사업 추진 및 긴급한 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u>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기타 이사회에서 정한 제 3 자에게 <u>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u> 5. <u>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6 에 따라</u>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전환사채 발행금액 증액 및 조문 일부수정</p>
<p>제 17 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u>20,000,000,000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u> 정관 제 16 조 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p>	<p>제 17 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u>100,000,000,000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u> 정관 제 16 조 제 1 항 각 호에 해당</p>	<p>신주인수권 발행 금액 증액 및 조문일부수정</p>

<p>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 3 (생략)</p>	<p>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 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동일)</p> <p><u>4. 재무구조 개선, 기술도입, 사업제휴, 신규 사업 추진 및 긴급한 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 융기관,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기타 이 사회에서 정한 제 3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 채를 발행하는 경우</u></p> <p><u>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16에 따라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u></p>	
<p>제 18 조(교환사채의 발행)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u>10,000,000,000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u> 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제 18 조(교환사채의 발행)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u>100,000,000,000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u>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교환사채발행 금액 증액</p>
<p>제 23 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 요에 따라 <u>이의 인접 지역 및 용인공장에서</u> <u>도 개최할 수 있다.</u></p>	<p>제 23 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에서 개 최하되, 필요에 따라 <u>이의 인접 지역에서</u> <u>개최할 수 있다.</u></p>	<p>주주총회소집 지 조문일부 수정</p>
<p>제 39 조(이사회 구성과 소집)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u>회일</u> <u>1 주간 전에</u>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 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 다.</p>	<p>제 39 조(이사회 구성과 소집)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u>회일</u> <u>1 일 전에</u>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 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 다.</p>	<p>이사회소집 통보시기변경</p>
<p>부칙 (생략)</p>	<p>부칙 (현행과 동일) 이 정관은 2022 년 03 월 30 일부터 시행한 다.</p>	<p>부칙신설</p>

[별첨2] 사내이사, 사외이사 후보자 약력사항

구분	성명	생년 월일	주요경력	최대주주 와의관계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추천인
사내 이사	김재영	1974. 05.19	전남대학교 의학사 아주대학교 의학박사 아주대학교병원 자문교수	없음	없음	이사회
사외 이사	김동화	1972. 04.21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 하버드경영대학원 MBA 애플 캐리어세일즈 리더 현)넷플릭스 비즈니스모델개발 이사	없음	없음	이사회